

의안번호	2202230
의 퇴 인	박지혜의원
회 답 일	2024.10.23.
추계번호	24D2294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이행을 권고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9조의2(국고 보조) 신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9조(예우 및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9조의2(국고 보조) 신설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등의 지급 시,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현재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 등 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최소 0원에서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표 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차이 현황: 2024

(단위: 원)

구분		최대	최소
독립유공자		본인	1,100,000
		유족	250,000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본인	310,000
		유족	250,000
	공상군경	본인	310,000
		유족	250,000
	전몰군경	유족	310,000
	순직군경	유족	310,000
	무공수훈자	본인	310,000
		유족	250,000
	보국수훈자	본인	250,000
		유족	250,000
	기타대상	본인	310,000
		유족	250,000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250,000
		유족	250,000
5·18민주유공자		본인	310,000
		유족	250,000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310,000
		유족	250,0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310,000
		유족	250,000
참전명예수당		본인	600,000
		유족	250,000

주: 1인당 지급단가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합한 금액임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